

대구예술대학교 정책개발팀 규정

(제정 2005.04.14. 교무위원회)

(개정 2019.06.20. 교무위원회/자구수정)

(개정 2020.03.09. 교무위원회/자구수정)

제1조 (목적) 본 규정은 대구예술대학교 정책개발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구성) ① 위원회는 우리 대학교 교수, 직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.

제3조 (임원 및 업무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, 간사 1명을 둔다.

② 위원장은 기획처장으로 하며,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총괄한다.(개정 2020.03.09.)

③ 간사는 기획처 직원으로 하고,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사무를 처리한다.(개정 2020.03.09.)

제4조 (임기)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5조 (위원회 기능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한다.

1. 우리 대학교 운영에 관한 전반적 사항
2.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6조 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위원으로 하되 심의사항은 출석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 (기타사항)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